# 에쓰-오일 '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사업' 참여자 모집 공고

에쓰-오일과 (재)함께일하는재단은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분들에게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여 푸드트럭 운영비 절감, 영업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> 2019년 5월 7일 (재)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

#### 1. 일반 사항

- [모집 사업] 에쓰-오일 '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사업'
- [지원 내용] 에쓰-오일 주유 모바일상품권 200만원 지원
- [모집 대상] 전국 청년(만 39세 미만) 푸드트럭 창업자 40개팀
  - 수도권 20팀 / 이외지역 20팀 최종 선발 예정
  - 취약계층 선발 우대 (우대 대상 및 제출서류 별첨 확인)
  - '18년 사업 지원자 및 선정자, '19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
- [모집 방법] 온라인 이메일 제출(우편, 팩스, 방문접수 불가)
  - 제출 양식 : http://hamkke.org/archives/category/notice
  - 제출 이메일 : startup4@hamkke.org
- [모집 기간] 2019년 5월 7일(화) ~ 2019년 5월 26일(일)까지
- **[기타 문의]** (재)함께일하는재단 창업지원팀 T. 02-330-0740

### 2. 모집 대상

○ 만 19세 ~ 만 39세 미만 청년, 정식 푸드트럭 운영 사업자로 아래 신청요건 충족 시 신청 및 선발 가능

<표> 신청요건

구분	내 <del>용</del>
사업 신청 자격	• 만 19세 ~ 39세 미만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로 실제 푸드트럭 운영자
	•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서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완료하여 운영중인 창업자
	•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와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자가 동일 한 사업자
	• 신청 사업자 대표가 위생교육증, 보건증 제출 가능자
우대 대상	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취약계층인 경우
	● [별첨] 우대 대상 및 관련 증빙 서류 참조
사업 신청 불가	• 불법개조를 통한 사업영위자
	• 프랜차이즈, 기업형 푸드트럭 운영자
	• 조리과정 없이 단순 가열식품 판매 푸드트럭
	• 고정 가판형 사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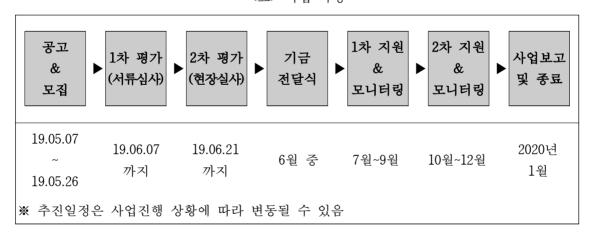
## 3. 선발

- **[1차 서류평가]** 최종 모집 인원의 1.5배수 1차 선발 (약 60팀)
  - 수도권 30팀 내외 / 이외지역 30팀 내외 약 60팀 1차 선발 예정
  - 서류상 신청자격, 창업 동기(사연), 가산점 대상 등 주요 평가
- [2차 현장실사] 1차 선발인원 전원 현장실사 후 최종 40팀 선발
  -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, 실제 푸드트럭 운영 여부, 조리과정 확인 등
- **[최종 선발]** 총 40팀 선발 (수도권 20팀 / 수도권 이외 지역 20팀)

### 4. 유류비 지원 형태

- [지원 형태] 에쓰-오일 모바일상품권 지급 (팀당 200만원 상당)
  - 1차 100만 원, 2차 100만 원 분할 지급
  - 1만 원, 3만 원, 5만 원 형태의 주유 모바일상품권 형태 지급
- [1차 지원] 선발 이후 에쓰-오일 모바일상품권 100만원 상당 지급
  - 지급 후 3개월 내 지급된 상품권의 80% 이상 사용 시, 2차 지원 가능
  - 1차 지원 이후 사용 내역 모니터링을 통한 2차 지원 여부 결정
- [2차 지원] 모니터링 결과 반영, 2차 유류비 100만원 모바일상품권 지급
  - 모바일상품권 사용 내역 확인 및 사업자 운영 현황 확인 이후 지급
- [모니터링 내용] 모바일상품권 유류비 정상 사용여부, 푸드트럭 정상운영 현황 확인 등
  - 부정사용 및 푸드트럭 폐업 시 발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 통제(중지)

<표> 사업 과정



## 별첨 우대 대상 및 관련 증빙 서류

- [우대 대상] 적용 대상은 사업자 대표로 한정
  - 증명서류는 제출일 기준,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
  -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대 대상 인정 불가

<표> 우대 대상자 제출 서류

우대 요건 종류 및 대상	증명서류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	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	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	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차상위계층인 경우	• 차상위계층증명서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저소득층(연소득 2천만원 미만)인 경우	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다문화가정의 가장인 경우	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다자녀(3자녀 이상)의 가장인 경우	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등본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	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	• 북한이탈주민등록화인서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	• 장애인등록증, 증명서
• 사업자 대표 본인이 자활관련 시설 입소자인 경우	• 증명서(자활시설에서 발급)